#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82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정연욱·김종양·서지영

엄태영 • 주호영 • 김선교

이헌승 · 김소희 · 최은석

정동만 • 박수민 • 박정훈

김민전 • 박상웅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의 변화를 보면 2009년 48개에서 2022년 76개로 늘어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대기업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따라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 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전단 등).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5조원"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내총생산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3 및 국내총생산액"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 의 지정 등) ① -----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 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 총생산액의 1천분의 3에 해당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하는 금액-----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 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 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 ⑥ -----국내총생산액 의 1천분의 3 및 국내총생산액 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